

(앞쪽)

제	호
수산생물검역관증	
사진 (3cm×4cm)	
성명	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	

54mm×86mm [백상지 80g/㎡]

(뒤쪽)

수산생물검역관증	
소속:	
직위/직급:	
성명:	
생년월일:	
위 사람은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.	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	직인
1.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 검역을 위하여 선박·항공기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, 수산생물 검역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물건 등의 수거를 거부·방해·회피한 경우에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	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	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	